

# 예산총칙

2015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66,366,760	10,991,003
일반회계	274,449,704	8,233,491
특별회계	91,917,056	2,757,512
공기업특별회계	6,562,160	196,865
의령친환경골프장지방직영기업공기업특별회계	6,562,160	196,865
기타특별회계	85,354,896	2,560,64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2,867,938	386,03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98,440	17,953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056,386	31,692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44,227,070	1,326,812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7,996,947	239,908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222,808	126,684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2,126,050	63,782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1,547,857	346,436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711,400	21,34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생략"

제 4 조 "생략"

제 5 조 "생략"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922,697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7,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